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. 8. 19 선고 2021가단1048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식

변 론 종 결 2021. 7. 15.

판 결 선 고 2021. 8. 19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13. 8. 16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

포항지원 등기와 2019. 10. 28. 접수 제692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채무자 E이 무자력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과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재산분할 당시 채무자 E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,400만 원 상당인 포항시 남구 F 답 110㎡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따라서 E이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,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법률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### 2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영철

별지